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

行政委員會專門委員 金基永

어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計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85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('14.1.1 일부개정)이 개정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등록면허세 세율인상

O 등록분: 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과 동일 적용 (안 제5조)

- 최저세액 변경 : 3,000원 → 6,000원

○ 면허분 : 50% 인상 (안 제7조)

	현 행
구 분	세 율
제1종	45,000원
제2종	36,000원
제3종	27,000원
제4종	18,000원
제5종	12,000원



	개 정
구 분	세 율
제1종	67,500원
제2종	54,000원
제3종	40,500원
제4종	27,000원
제5종	18,000원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제28조 및 제3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·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세법」이 2014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O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에 "소유권의 보존등기 등"의 최저세액을 3,000원에서 6,000원으로, "그 밖의 등기"를 건당 3,000원에서 6,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종별로 50%씩 각각 인상하였음.
- 이 개정 조례안은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「지방세법」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허세의 최저 세액과 세율을 50%씩 각각 조정 및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검토결과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, 개정에 따라 구 세입이 약 11억원¹⁾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¹⁾ 등록면허세 등록분 : 1억원, 등록면허세 면허분 : 10억원 (※ 해당부서 추계)

참 고 자 료

1 지방세법

제28조(세율)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〈개정 2010.12.27, 2011.3.29, 2011.12.2, 2011.12.31, 2013.1.1, 2013.3.23, 2014.1.1〉

1. 부동산 등기

가. 소유권의 보존 등기: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(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.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)

마. 그 밖의 등기: 건당 6천원

제34조(세율)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〈개정 2014.1.1〉

구분	인구 50만 명 이상 시	그 밖의 시	군
제1종	67,500원	45,000원	27,000원
제 2종	54,000원	34,000원	18,000원
제 3종	40,500원	22,500원	12,000원
제 4종	27,000원	15,000원	9,000원
제 5종	18,000원	7,500원	4,500원